



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



과태료 부과근거 및 기간

근거 법령	☑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, 제83조(과태료)
단 속	☑ 위반행위 적발 → 마스크 착용 지도 → (불 이행시) 과태료 부과
과태료 처분	☑ 2020. 11. 13.부터 ~ 별도 해제 시까지
과태료 금액	☑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
마스크종류	☑ KF94, KF80, KF-AD, 수술용·천·일회용 마스크

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

중점관리시설 (9종)	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(시설 허가·신고면적150㎡ 이상))
일반관리시설 (14종)	학원(교습소 포함, 독서실 제외), 오락실·멀티방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장례식장, PC방, 직업훈련기관, 아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 카페
기 타	대중교통, 집회·시위장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·주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경기장,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·행사

※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범위는 단계별(5단계)로 차등 적용

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

예 외 자	☑ 만 14세 미만자, 뇌병변·발달장애인, 호흡기 질환자 등
예외상황	☑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



코로나19 상황에서

마스크 올바른 사용법



마스크 착용 전
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
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!



입만 가리는 착용



턱에 걸치는 착용



걸을 만지는 행위



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 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.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.

